비조치의견서 (□비조치 □조치 □기타)

티오시크전시 (□티오시 및도시 □기다)						
	담당 부서	IT검사국	담당자 (직위, 성명)	안기복 선임검사역	연락처	02-3145-7429
요청대상 행위	□ 금융회사가 내·외부통신망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환경에서 대고객 데이터 요약 서비스* 제공을 위하여 DMZ 구간에 위치한 중계서버를 통해 내부 통신망에 위치한 서버와 외부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것이 전자 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5호 위반인지 여부 * 금융, 경제 관련 뉴스 등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를 요약하여 고객에게 전달하는 서비스					
판단	□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					
판단이유	 □ 「전자금융감독규정」제15조제1항제5호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시스템과 해당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, 개발,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 외부통신망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, ○ 다만,「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」제2조의2는 업무상 외부통신망과 연결이불가피한 정보처리시스템에 한하여 망분리 적용을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. □ 귀사가 DMZ 구간에 위치한 중계서버를 통해 내부망에 위치한 서버와외부망에 위치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것은 전자금융감독규정제15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. ○ 망분리 적용이 예외되는 '업무상 불가피한 경우'란 망분리 환경에서 전자금융업무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며, ○ 문의하신 사실관계 하에서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업무상 불가피하다고볼 수 없으므로 물리적 망분리 적용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 					

- **** 비조치의견서의 효력**(「법령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업무처리에 관한 운영규칙」 제6조의2, 제11조제1항·제2항 참조)
 - 1.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행위가 법령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에 회신내용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.
 - 2.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이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
 - 가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

- 나. 신청인이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
- 다. 신청인이 요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- 라. 관련 법령등이 변경된 경우
- 마.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변동,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의견을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3. 금융감독원장이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제재 등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조건부 비조 치의견서를 회신하였으나 신청인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은 이 미 회신한 비조치의견서의 내용과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